

보도 일시	2022. 11. 25.(금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2. 11. 25(금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책임자	과 장 서민아 (044-201-6810)
		담당자	사무관 이은혜 (044-201-6813)
		주무관	엄효미 (044-201-6816)

경남 사천시 모레마을 주민 환경오염피해 인정받아 승소

- 환경부 소송지원 통해 호흡기계 질환 등 인정, 1억 6천만 원 배상 결정 -

□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‘사천 모레마을(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)’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.

○ 재판부(부산고등법원)는 조선소의 날림(비산)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(호흡기계 질환·정신적 피해)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*를 지급토록 판결했다.

* (총85명 약1억 6천만 원 위자료 지급) 1인당 10~300만 원, 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(최대 200만 원),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, 불면증·우울증 50만 원

□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*를 통해 구성·운영 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**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,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,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.

* 저소득층,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및 소송 비용 지원(1인당 법률자문 최대 100만 원, 변호사비 200만 원, 기타 인지대 등)

**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 청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, 2년 임기, 20명 (환경부 장관이 위촉,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)

- 사천 모레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.
 -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.
 -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,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.
-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,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-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,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
 -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.
-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“사천 모레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”라며,
- “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1. 환경부 소송지원제도 개요.
 2. 질의응답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책임자	과 장	서민아 (044-201-68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은혜 (044-201-6813)
			주무관	엄효미 (044-201-6816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	책임자	실 장	황의득 (02-2284-1840)
		담당자	연구원	조인근 (02-2284-1853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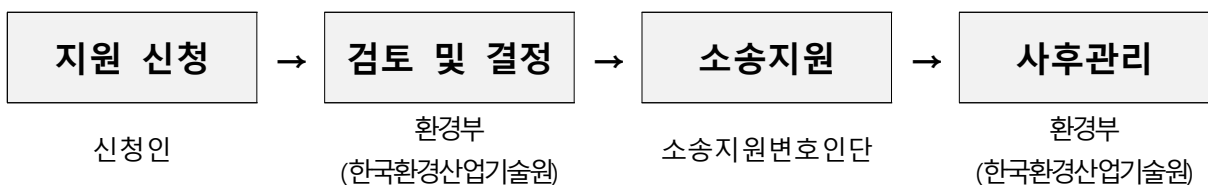
□ **제도 개요**

- (목적)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사회 취약계층 피해자의 손배청구 소송을 지원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돕고 환경정의 실현
- (근거) 「환경오염피해구제법」 제42조
- (지원대상)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청년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북한이탈주민, 국가보훈대상자 등

구 분	세부 지원대상
저소득층	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% 이하인 사람
고령자	65세 이상인 사람
장애인	장애인
청 년	15세이상 29세미만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
경력단절여성	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
국가보훈대상자	국가보훈대상자
기 타	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□ **지원내용 및 절차**

- (지원내용)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및 소송비용 지원
 - ①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 : 100만원 이내(신청인당)
 - ②소송대리 변호사 보수 : 200만원 이내(신청인당)
 - ③소송비용(인지액·송달료, 검증 및 감정 비용) : 일부 또는 전부
 - ④패소비용(소송지원 사건이 패소한 경우 상대방 변호사 보수) : 50% 이내
- ※ 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는 취약계층 전부, ②~④는 저소득층 한정
- (지원절차) 소송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지원 대상적격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변호사 매칭 및 소송지원 수행



1. 이번 사천 모레마을 소송의 판결 요지는 무엇인지?

- 조선소에서 배출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 호흡기계·정신적 질환 발생 개연성 높음, 이에 따른 조선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임
- (배출) 조선소의 선박 건조·수리업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며, '19년까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유효한 시설을 갖추지 못함
- (도달) 조선소 내에서 검출된 중금속(철, 구리, 아연 등)이 모레마을 퇴적 먼지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됨
- (피해) 중금속 포함 비산먼지로 인한 호흡기계 및 정신적 질환 발생 가능

2. '환경오염피해'란 무엇인가?

-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, 소음·진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말함

※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

<법 적용 대상 시설 현황>

구 분	시 설
대 기	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수 질	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·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
폐기물	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
건설폐기물	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포함한다)
가축분뇨	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
토 양	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화 학	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취급시설로서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 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
소음·진동	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·진동배출시설
잔류성 유기오염물질	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
해 양	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*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을 포함한다)시설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

3. 소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?

-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른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 등 아래 대상자가 받을 수 있음

구 분	지원 대상
저소득층	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% 이하인 사람
고령자	65세 이상인 사람
장애인	장애인
청 년	15세이상 29세미만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
경력단절여성	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
국가보훈대상자	국가보훈대상자
기 타	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4. 소송지원 관련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?

- 법률 자문과 소송서류 검토, 소송대리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, 패소시 패소비용(50%)을 지원받을 수 있음

※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, 패소비용 지원은 저소득층만 해당

구 분	지원 금액
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	100만원 이내(1인당)
소송대리 변호사 보수	200만원 이내(1인당, 저소득층에 한함)
소송비용	인지액·송달료, 검증 및 감정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
패소비용	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의 50% 이내

- 소송지원 제도 관련 문의 또는 신청을 희망할 경우, 운영기관인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(☎02-2284-1853)로 문의

5. 소송지원변호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?

-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, 실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20명 이내로 구성됨(임기 2년)